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- 호

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」 제13조의11제4항에 따라 교통영향
평가 교육훈련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·고시합니다.

2023년 5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

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

1. 목적

-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32조의4제2항 및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」 제13조의11제4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지정·운영

2.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

- 기관 명칭 : 교통영향평가협회
 - 대표자 : 이기중
 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, 과학기술회관 신관 501호
 - 지정번호 : 제2023-1호

3. 지정기간

-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취소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